

2025년 수원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1 감사근거 및 배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수원시 감사규칙」 제20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수원문화재단 운영 전반
- 감사범위 : 2022. 1. 1. ~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5. 3. 10.(월) ~ 3. 21.(금) [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관 등 7명

4 감사 중점사항

- 계약 집행 및 지출관리 적정성
- 인사운영 및 복무관리 실태
- 시설·물품관리 적정성
- 전시장 및 회의실 등 기타 부대시설 운영(대관) 적정성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행정상				재정상(금액)	신분상(인원)
건수	금액	인원	통보(모범)	통보	개선	주의	시정	주의
10	898	1	1	2	1	4	1(898)	1(1)

○ 지적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천 원, 명)

처분번호	제 목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인원)
계	10건	통보 3 개선 1 주의 4	시정 1 (898)	주의 1(1)
1	적극적인 공연 유치 노력으로 문화특례시 조성에 기여	통보(모범)	-	-
2	기록물 관리 부적정	통보	-	-
3	수원화성 주차장 관리 부적정	통보	-	주의(1)
4	징계처분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기준 미비	개선	-	-
5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부적정	주의	-	-
6	수의계약 업무처리 및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주의	-	-
7	선금 지급업무 부적정	주의	-	-
8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주의	시정(회수) (898)	-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1. 적극적인 공연 유치 노력으로 문화특례시 조성에 기여

- 수원sk아트리움의 공연 기획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2014년 950백만 원에서 2024년 301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4년도 우수 공연 유치와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재단은 공연자의 티켓 판매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 공동제작 방식을 도입하거나, 국·도비 지원사업 분석을 강화하여 공모사업에 지원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연을 기획·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 △ 그 결과 재단은 2024년 5월 총 4회의 공동제작 공연을 기획·유치하였고, 2024년 공연 예산으로 국·도비 788백만 원을 확보하여 총 14회의 공연을 기획하고 6,587명의 시민이 관람하는 성과 창출

조치 사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연 공동제작 방식 도입,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하여 문화특례시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 [통보(모범사례)]

2. 기록물 관리 부적정

- 재단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 권 이상이거나 보존 대상 기록물이 5천 권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기록관을 설치·운영 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그런데 재단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또한 배치하지 않음
- △ 그 결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폐기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 대상 기록물 총 2,503권을 계속하여 보관

조치 사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록물 전문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기록물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통보)

3. 수원화성 주차장 관리 부적정

- 재단은 수원화성 일원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위하여 (주)○○○ (이하 “업체” 라 한다)과 「2024년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 ① 주차장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부적정
 - 「수원시 정보보안 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재단은 해킹,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 보안관련 책임 의무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업체와 계약 체결
 - △ 그 결과 재단은 업체의 보안관리 부주의로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주차장을 3일 무료 개방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여 주차장 수입금 약 3,604천 원의 세입 손실 초래
- ② 주차장 수입금 정산 소홀
 - 「수원시 문화예술 및 관광 시설·사무 위·수탁 계약서」 등에 따라 재단은 수원화성 일원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에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용역 업체가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누락 없이 정산 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그런데 재단은 업체가 주차장 수입금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차장 수입금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시정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
 - △ 그 결과 재단은 주차장 수입금 총 9,608천 원의 세입 손실 초래

조치 사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보안관련 준수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통보)
② 누락된 주차장 수입금을 정산받아 수원시에 세입처리하여 시정이 완료 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고 [통보(시정완료)]
③ 앞으로 주차장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세입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엄중하게 주의 촉구(주의)

4. 징계처분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기준 미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승급이 제한됐던 기간을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재단은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2015. 12. 3. 처분한 징계기록을 말소하지 못하고 승급이 제한된 6개월을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등 징계처분 받은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기록을 그대로 두고 있음
- △ 그 결과 재단은 징계처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등 임직원 사기 저하 초래 우려

조치
사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징계기록 말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단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개선)

5. 수의계약 업무처리 및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물품,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독립·가분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재단은 “2022년 수원SK아트리움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공사”에 대하여 성능인증제품인 버너는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설치 공사와 분할 발주하지 않고 1인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3,256만 원) 체결
 - 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완제품 구입비용과 인허가 대행수수료는 기타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재료비와 경비에 각각 잘못 포함하여 계상
- △ 그 결과 재단은 계약업무의 절차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적정 예정가격 대비 431만 원 과다하게 산정

조치
사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물품의 구매와 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혼재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정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 철저(주의)